

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수업료등 반환기준(제11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		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학생이 수 강 을 계 속 할 수 없을 경우	가.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교육시작 전	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
		2) 총교육시간의 1/3 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수업료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교육시간의 1/3 이 지난 후부터 1/2 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수업료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교육시간의 1/2 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않음
	나.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 교육시작 전	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
		2) 교육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위 표에서 “수업료등의 징수기간”이란 수업료(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,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위 표에서 “총교육시간”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